

의안번호	2201303
의 퇴 인	소병훈의원
회 답 일	2024. 7. 25.
추계번호	24C154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부모지원시설에 의한 보호, 임대주택의 공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음 주거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임의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안 제18조의6)

-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로 여성가족부는 현재 청소년부모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사업,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소년한부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표 1] 청소년부모 복지 지원 사업 현황(2024년)

구분	내용	예산(백만원)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청소년부모, 위기 임신·출산 가족, 이혼위기가족 등에게 가족센터를 통한 상담, 교육, 법률 지원, 생활도움지원 등 실시	22,466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및 자립촉진수당 지급	2,852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하고 가족프로그램, 취업 지원 등 제공	1,962

자료: 여성가족부

-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시설이나 임시주택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주거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주거 지원시설 등의 설치 여부 및 설치·운영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우병혁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우병혁	02-6788-3739	wbhcd@assembly.go.kr